

「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10월 23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11월 7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11월 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경제과장)

가. 제안이유

현재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, 농공단지 신규 조성 및 기존 농공단지 운영을 위해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필요하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(안 제6조)
 - (현행) 2023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28년 12월 31일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. 끝.

「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
- 제안일자 : 2023. 10. 23.
- 회부일자 : 2023. 11. 7.

2. 제안이유

- 현재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, 농공단지 신규 조성 및 기존 농공단지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필요하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(안 제6조)
 - (현행) 2023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28년 12월 31일

4. 검토내용

가. 관련 근거

- 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 제13조에서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시,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제9조제4항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운용 중인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,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지속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6조(존속기한) 중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
(현행) 2023년 12월 31일에서 (개정) 2028년 12월 31일로
5년 연장할 것을 명시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이고,
-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¹⁾를 거쳤으므로 사전 행정 절차도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며,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1) '23년 제3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'23. 9. 19. ~ 20.) 심의 결과: 원안의결

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현재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, 농공단지 신규 조성 및 기존 농공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필요하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(안 제6조)

- (현행) 2023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28년 12월 31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

2) 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 제13조제6항제1호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특이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3. 9. 14. ~ 10. 3.) 결과, 의견제출 없음
- 2) 규제심사 : 비규제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5)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: 원안의결
- 6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존속기한)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를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까지</u> 로 한다.	제6조(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□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

제13조(단지조성비의 지원) ① ~ ⑤ (생략)

⑥ 단지조성비로 지원된 지방보조금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2. ~ 6. (생략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2. 미첨부 근거 규정 :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제3조제5항제1호
3. 미첨부 사유 :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경제과장 김 남 섭
연락처	(033) 330 - 2745